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82호 2022년 4월 27일(수)

## 조 례

-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3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속초시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17
-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25
-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29
-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31
-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36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1

-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938호

###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속초시의 책무)** 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속초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속초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속초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속초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속초시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담당관·과·소장급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비전 및 속초시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시행과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정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감축계획서 또는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온실가스감축보고서의 작성·제출의 방법·절차와 평가·지원중단·지원금 반환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특정사업자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임차인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분할·양수·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 사업자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

한다.

④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립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속초시적응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관할구역의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속초시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적응대책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적응대책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물 관리 사업)**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 제43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녹색국토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국토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농림수산의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농림수산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극한 기후 대책 및 의료 서비스 확대
2.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
3. 녹지 쉼터 제공
4.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에 따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주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제2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정성·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 대행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속초시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 대행

②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센터 대상기관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39호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  
촉된 공무원

같은 조 제8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940호

### 속초시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속초시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이란 남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3.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남북귀환어부 중,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피해자의 형제자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피해일 당시 속초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

2. 진실규명 대상자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접수 지원 및 홍보

3. 그 밖에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① 시장은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
2.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홍보
3. 피해자 위로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1호

###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활동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연·사회재난 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2.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헌혈 및 헌혈 권장 홍보에 관한 사업
4. 취약계층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사업
5.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관련 인도적 봉사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942호

###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단체”를 “주민 문화예술단체”로, “포럼”을 “포럼, 설명회, 공청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특화지역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 유희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 따른 시 소유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2. 지역문화자원 자료화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 등을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각종 공모, 자료수집, 홍보 이벤트 등)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시민문화활동가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속초시 출연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활동가, 청년활동가, 문화전문인력 등)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지원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5. 국내·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3호

###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을 “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정책홍보사업
2.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3. 사회복지 관련 행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4호

###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 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 른 장애인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 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및 육성)**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 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원사업 범위(제9조제1항 관련)

1. 장애인 사회적응캠프·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의 컴퓨터·신문·점자·음악 관련 지원사업
3. 장애인의 건강증진·자조모임·상담·사회화교육 지원사업
4. 장애인 체육활동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지원
5. 장애인 각종 대회·행사 참가 및 캠페인 활동 지원
6. 장애인 돌봄 및 재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7.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8.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및 이동권 보장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단체 환경개선 및 차량지원 등 기능보강사업
10. 장애인 및 시설·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1. 장애인 복지분야 사업평가 및 교육 지원 사업
12. 장애인 기념행사·체육행사·영화 예술제 등 행사 지원사업
13. 장애인의 권익 및 인식개선 관한 지원사업
14. 중증장애인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5호

###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조제9호를 제4호로 한다.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
2.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3. 노인회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6호

###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속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3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947호

###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운수사업자”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시내버스 통합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4.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5.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
6.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사업목적 및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사업비	보조금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부담	
	원	원	원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span>신청인</span> <span>(인)</span> </div>				
속초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li> <li>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li> <li>3. 통장 사본</li> <li>4. 사업자 등록증</li> </ol>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8호

###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8.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10.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49호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50호

###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회의 등의 여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51호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관리감독)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8조 관련)**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물의 품종개발·생산 등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지원</li> <li>2. 바다숲 조성, 갯녹음 복원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대문어 등 어미 수산생물) 등 수산자원조성사업</li> <li>3.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보수·보강과 주변 정비사업</li> <li>4. 수산자원조성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비용</li> <li>5.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 및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업지도활동을 위한 단속장비 구입 지원</li> <li>6. 어장정화·정비 및 어장환경 개선·정비사업, 유해생물 구제 및 외래어종 퇴치 등 수생태계 보호사업</li> <li>7. 수산물 공동집하장 및 양식장 신설보수, 지하수 개발, 폐수처리시설 및 기자재·장비 공급 지원</li> <li>8. 내수면 분야 생산·가공·유통 시설지원</li> </ol>
2. 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 등의 직불금 및 장비 지원</li> <li>2. 여성어업인·수산인 등의 경영안정, 인력육성, 정보화 교류 및 물품지원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 행사 지원</li> <li>3.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가비 및 개최비 지원</li> <li>4. 외국인 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li> <li>5. 어항 기능 및 편의시설 건립 및 보수·보강 지원</li> <li>6. 도시와 어촌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및 다문화 가정, 고령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지원, 의료 서비스, 문화활동, 교육 등 복지 지원</li> <li>7. 수산인 단체·수산인 등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건립·이전 및 개·보수 사업</li> <li>8. 성황당 개·보수 및 성황제 행사 등 어촌전통 문화계승 지원</li> </ol>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각종 보호장구, 잠수복 등 조업장비 지원</li> <li>2.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어로항해·기관 등 어업 기자재 지원</li> <li>3.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시설·설비 및 어선 장비현대화 지원</li> <li>4. 유어·낙시어선업 및 낙시터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li> <li>5. 재해를 입은 어선·어업시설물·장비 보수 및 구입 지원 등 응급복구 비용 지원</li> <li>6. 자연·사회 재난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인의 재해보상보험, 공제료 등 자금 지원</li> </ol>
4.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식품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수산가공업 기자재 지원 및 식품개발·보급 지원</li> <li>2. 국·내외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지원</li> <li>3. 횃집단지 및 활·선어 판매장의 해수공급시설 신설 및 보수·보강</li> <li>4. 수산인 단체·수산인 등 지역특산물 유통·판매시설 건립, 개·보수 및 활성화를 위한 설비·운영비 지원</li> <li>5. 수산인 단체·수산인 등 지역특산물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li> </ol>
5. 해양관광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li> <li>2. 해양레포츠 기반·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li> <li>3. 수질정화·환경개선, 연안·수변구역 종합관리를 위한 육·해상 폐유·폐기물 수거·처리시설 등 바닷가 종합관리 지원</li> <li>4.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지원</li> </ol>
6.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촌체험관광·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귀어업인 정착·교육훈련 지원</li> <li>2. 수산인 등의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시설구축, 사업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li> </ol>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52호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9.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업·농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여성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업 육성
5.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
8. 농촌의 교육·문화·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속초시에 주소지와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야별 지원사업 범위(제6조제2항 관련)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
농산물 선별 및 가공을 위한 지원	1.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선별기계 지원
	2. 농산물 가공장 설치 및 가공기계, 장비 지원
농산물 포장관련 지원사업	1.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2.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재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1. 농산물 택배비 및 온라인 유통비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	1.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브랜드 개발 지원
	2.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브랜드 홍보 지원
	3. 농산물의 가공과 식품의 개발 및 시설, 장비 지원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	1.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마케팅 지원
	2.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판매장 환경개선 지원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기반 지원사업	1. 농산물 유통자재 및 유통차량 지원
	2. 농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 저온유통차량 지원
	3. 벼 수매용 장비 및 자재 지원
농촌자원 문화축제 및 농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사업	1. 농촌자원 활용한 축제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 지원
도농교류를 위한 지원사업	1. 1사1촌 교류행사 및 도시민 농촌체험을 위한 기계·자재지원
	2. 농업·농촌 체험학습비 지원
농업전문인력육성	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교육 및 위탁교육 지원
농업인단체의 영농활동 지원사업	1. 농촌지도자·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 등 영농활동 및 과제 지원
	2. 영농4-H 및 학교4-H 과제 지원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 농업인의 날 및 수련대회 지원
	2. 해외연수 및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 등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1. 벼 육묘시설 설치, 기자재(육묘운반기·이송기 등) 및 개보수 지원
	2. 벼 육묘용 상토 및 영양제 지원
	3.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4.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증식포 운영 자재(종자·비료·농약) 지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 및 출하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1. 친환경 쌀 실천 농업 장려금 지원
	2.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사업	1.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보조제 등)
	2.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살포비 지원
	3.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병해충방제 사업단 운영 지원
	4.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기계(방제용드론, 광역살포기 등) 지원
	5. 농작업 안전 및 농약중독 예방 기자재 지원(방제복, 방독 마스크 등)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1.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2.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농자재 지원
	3. 논 타작물 및 논 이모작 재배를 위한 종자·농자재 지원
	4.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 및 이모작 재배를 위한 종자·농자재 지원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1. 시설하우스(비닐 등) 및 설비(관수·관비·차광·보온 등) 지원
	2. 시설하우스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
	3. 시설채소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기자재(심토파쇄기, 녹비종자, 토양개량제 등) 지원
	4.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종자, 약제, 농자재 등)
	5. 시설하우스 스마트팜화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1. 병해충약제(살균, 살충제, 페로몬, 트랩 등) 지원
	2. 기자재(가지유인, 전지·전정·적화, 과일봉지, 기피제 등) 지원
	3. 시설(비가림, 자동관수, 배수, 덕 등) 지원
	4. 농기계(병해충방제기, 고소작업차, 선별기 등) 지원
기후변화 대비 새소득·기능성 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1. 기후변화 대응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 온대작물 재배적지 복상에 따른 시설 및 대체작목 지원
	3. 새소득·기능성 작목 도입을 위한 우량 종자, 종묘, 묘목 지원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
로컬푸드 농산물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	1. 시설하우스(비닐 등) 및 설비(관수·관비·차광·보온 등) 지원
	2. 저온저장고 등 저장시설 및 포장재 지원
	3. 종자·종묘 및 농자재 등 지원
	4.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판매대 및 저온·냉동 시설 지원
농작업 취약농가의 노동경감, 모·부성 권 보호 및 가사취약 농가 복지증진을 위 한 지원사업	1. 고령 및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경운,정지,피복,수확 등)
	2. 고령 및 여성농업인 육묘 지원
	3. 복지취약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1. 농산물의 품종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및 설비·기자재 지원)
	2. 종자·종묘 및 노동력 절감(생분해성 멀칭비닐 등)을 위한 농자재 지원
	3. 농자재(비료·농약·상토 등)가격상승 및 유류대(시설재배 난방용)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차액지원
	4.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벼 건조료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유기농업자재, 제조제 등), 종자 등
	2.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조성, 연중생산시설 등 지원
친환경 면적확대 및 농산물의 안전성 제 고를 위한 지원사업	1. 친환경 인증비용 및 GAP 인증비용 지원
	2.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제조자재, 천적 등) 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공 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 임산부·청소년 등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2.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한 포장재, 유통기자재 지원
토양지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 토양개량제 지원 및 살포비용 지원
	2. 유기질비료 지원 및 살포비용 지원
	3. 토양검정 비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깨끗한 농촌가꾸기 활동 및 농업환경 보전 활동지원사업	1.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농업경영인 등 단체의 농촌정화활동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1. 조사료 생산을 위한 축산장비 지원
	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및 자재 지원
	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
-----	---------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 우사수분조절제 지원
	2. 축사시설 개선 및 가축분뇨 장비 지원
	3. 축산환경개선 약품 지원
	4.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5.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1.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장비 지원
	2. 송아지 성장 활성화를 위한 사료첨가제 및 약품 지원
	3. 수입건초 지원
	4. 배합사료 및 TMR사료 지원
	5. 가축진료 지원
	6. 한우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7. 도축 운송비 지원
우량한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 우량혈통 보급을 위한 종축개량 지원
	2.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
	3. 송아지 거세 기술비 지원
	4. 한우 고급육 초음파진단 지원
양계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1. 신품종 맞닭 지원
소형농기계 및 가뭄 관련 지원사업	1. 소형농기계 및 부속작업기(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구입 지원
	2.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재해보험 지원사업	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4. 가축 재해보험 지원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53호

속초시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강사의 위촉)”을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54호

###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6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1. 양봉 사육·질병예방 및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2. 양봉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저장을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
3.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양봉사료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955호

###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1의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자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견 문화축제
2. 유기동물 입양행사
3. 어르신 반려견 입양지원사업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